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30호 2024. 4. 11.(목)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873호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
 고성군 조례 제2874호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5
 고성군 조례 제2875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7
 고성군 조례 제2876호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고성군 조례 제2877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예 규

고성군 예규 제20호 고성군 스톡킹 예방 지침 21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4-659호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32
 고성군 공고 제2024-675호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38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4-67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57호선(천리교 주변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4
 고성군 고시 제2024-6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46
 고성군 고시 제2024-71호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9
 고성군 고시 제2024-72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51

회 람									
--------	--	--	--	--	--	--	--	--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4년 4월 11일

고성군 조례 제2873호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3.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지원
-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
- 4. 방문간호서비스

- 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지원
-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4년 4월 11일

고성군 조례 제2874호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관리

-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4년 4월 11일

고성군 조례 제2875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로서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공동주택 또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활용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군내 소재한 단독·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감량기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p>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p>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p> <p>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p> <p>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p> <p>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p> <p>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p> <p>※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p>
---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4년 4월 11일

고성군 조례 제2876호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성군의” 를 “군의” 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입주자격)” 을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성군” 을 “군” 으로, “초등학생” 을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군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위원회” 를 “협의회”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입주자격” 을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입주세대의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졸업 후 군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거주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u>고성군</u>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군수의 책무) ① ----- ----- <u>군의</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군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작은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 <u>사업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 제></p> <p><삭 제></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u></p> <p>② <u>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삭 제></p> <p><삭 제></p>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 1.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1명
-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삭 제>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삭 제>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업무 담당이 처리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촉 사항은 제6조제4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삭제>

<삭제>

제9조(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생략)

② 협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2조(입주자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고성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로 한다.

<신설>

제13조(입주자 선정) ① (생략)

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를 신청한 세대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통해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①

----- 군 -----
-----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

②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군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심의·의결 한다.

③ (생 략)

제14조(거주기간) 임대주택의 거
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
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15조(입주계약 등) ① (생 략)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
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
의 특별한 사유로 명의를 변경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조치) ①
(생 략)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
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 5. (생 략)

③·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거주기간) <삭 제>

제15조(입주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협의회-----
-----.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입
주자격 및 거주기간 -----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4년 4월 11일

고성군 조례 제2877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 를 각각 “10미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생략)</p> <p>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p>	<p>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p>
<p>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②·③ 삭제</p> <p>④ ~ ⑦ (생략)</p>	<p>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 ----- ----- ----- -----.</p> <p>1. --- 10미터 ----- ----- -----</p> <p>2. --- 10미터----- ----- -----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고성군 스토킹 예방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4년 4월 11일

고성군 예규 제20호

고성군 스토킹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성군수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소속 구성원(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 고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스토킹 예방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 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고성군 누리집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고성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충 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고성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감사·인사·복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5.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군의 스톡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군수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스톡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톡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군수는 스톡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소속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스톡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톡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톡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톡킹 피해 및 위협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군수는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에서 스톡킹이 발생한 경우 스톡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톡킹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톡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톡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톡킹 조사신청을 고충상담 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전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스톡킹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일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조사 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톡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 유지) ①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군수는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 또는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및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 고충상담원 등 직무상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고성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군수가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군수가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 1. 스톡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스톡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군수는 스톡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톡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스톡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톱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스톱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톱킹 예방교육, 스톱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스톱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톱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톱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스토킹 예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결과

- 조사내용 중 주요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고성군 공고 제2024-659호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고 성 군 수

1. 재정이유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른 고성공룡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지질공원 인증 추진 관련 지원(안 제4조)
- 다. 지질공원해설사 활용(안 제5조)
- 라. 고성공룡지질공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제7조)
- 마. 주민협의체 설치(안 제8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

- 1) 주소: (52963) 경남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2) 전화: (055)670-4462, 팩스: (055)670-4459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전화: 055-670-44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고성공룡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질공원을 말한다.
-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 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①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 양성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주민협의체) 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때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4-675호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2024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안 제19조)

나.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안 제21조제1항)

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2조, 제23조)

라. 비상설 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 변경(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 2) 전화: (055)670-2372, 팩스: (055)670-26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055-670-23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5명**” 을 “**10명**”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회의)**” 를 “**(위원회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의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p>	<p>제1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의 설치) ----- ----- ----- ----- <u>둘</u> <u>수 있다.</u></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p> <p>② ~ ④ (생략) <u><신설></u></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10명</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 산한다.</u></p>
<p><u>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삭제></u></p>
<p><u>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1. <u>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u></p>	<p><u><삭제></u></p>

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④ (생략)

제26조(위원회 운영) <삭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4-67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57호선(천리교 주변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58-2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57호선(천리교 주변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은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3.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57호선)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57호선(천리교 주변도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57	8~10	국지 도로	547	중로3-3 (서외리 158-2)	중로3-17 (교사리 114-25)	일반 도로	-	-	-

2.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소로2-15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신설 - 연장: 547m - 폭원: 8~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읍 서외리 158-2번지 일원의 천리교 주변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급회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보행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도로)을 신규 결정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4-6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3.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영현면 대법리 116	영현면 대법2길 75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현면 대법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2	영오면 오서리 398 외 1필지	영오면 영화로 75-5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도로의 시종점인 영오면과 회화면을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3	거류면 감서리 497-3	거류면 감서3길 70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거류면 감서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4	거류면 은월리 1172	거류면 은월3길 54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거류면 은월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5	고성읍 서외리 249-13	고성읍 남포로99번길 29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99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6	마암면 두호리 산1-8	마암면 남해안대로 3135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해안을 잇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부여	
7	고성읍 수남리 357	고성읍 남산로 6-60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남산공원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8	회화면 봉동리 58	회화면 봉동9길 128	2024. 4. 3.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봉동리)을 이용하는 아홉번째 도로	

고성군 고시 제2024-71호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81-1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9.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조서

1.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1	체육 시설	파크 골프장	고성읍 수남리 581-1번지 일원	-	증) 30,262	30,262	-	-

2.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1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크골프장 신설 ○ 면적: 30,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주민편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신규 결정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4-72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9.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삼산면 미룡리 1071	삼산면 두포로 327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여 두포로로 명명	
2	회화면 삼덕리 112-1	회화면 삼덕5길 171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삼덕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3	동해면 외산리 681-6	동해면 외산로 90-14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4	동해면 외산리 681-11	동해면 외산로 90-6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5	삼산면 두포리 230-24	삼산면 두포6길 19-24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6	삼산면 두포리 1071-3	삼산면 두포1길 149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7	동해면 내곡리 1260-2	동해면 내곡2길 66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내곡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8	삼산면 두포리 222-4	삼산면 두포6길 29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9	대가면 송계리 761-1 외 1필지	대가면 송계3길 92	2024. 4. 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 송계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건물등의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효력일자	폐지사유	비고
1	삼산면	두포1길 149	2024. 4. 9.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2	삼산면	두포6길 29	2024. 4. 9.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3	대가면	송계3길 92	2024. 4. 9.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